

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안내

1. 관련: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제3항 (별표 1)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5호
2. 교육대상: 양성과정생 및 재교육과정생 중 부전공취득과정생
3. 교육기준

가. 인정 기간 및 교육 횟수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

나. 인정 교육

1)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

2)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 학교(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 포함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(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관련)

※ 소속학교(기관) 내부결재 문서

①시행계획, ②참석명부 포함된 시행결과, ③②항의 서류가 없을 경우 이수증(또는 이수 확인서) 제출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)제출(업로드)

※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이수증만 인정

(예시: 2024년 3월 1일 입학한 교육대학원생은 2024년 3월 1일 이후 교육받은 이수증 인정)

4.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

가. 교육내용

차시	교육 내용
1	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2	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3	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4	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나. 교육 내용은 교육부 실무편람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는 내용임.

5. 성인지 교육 신청 및 소속학교(기관) 이수증 등 제출

가. 메뉴: [홈](#) | [학생기본](#) | [교직원정보](#) | [성인지교육 신청](#)

나. 실습 신청

- **차수***는 1차, **프로그램명***은 아래 구분을 참고하여 선택, **신청**을 클릭하면 완료

다. 소속학교(기관)에서 실시한 성인지교육 이수증(내부결재 문서) 업로드

- **차수***는 1차, **프로그램명***은 아래 구분을 참고하여 선택, **신청**을 클릭하고,

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이수증을 업로드하고 **첨부파일 저장**을 클릭하면 완료

- 이수증 외 [소속 학교\(기관\)의 내부결재 문서](#) 등(시행 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 가능

라. **프로그램명*** 선택

마. 성인지 교육 신청 및 이수증 제출 기한: 2024. 9. 9.(일) ~ 12. 8.(일)

2024년 9월

교육대학원장